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제1장 총칙		
<p><b>제1조 (상호)</b> 본회사는 주식회사 퀀타매트릭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QuantaMatrix Incorporated라 표기한다.</p>	<p><b>제1조 (상호)</b> 본회사는 주식회사 퀀타매트릭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QuantaMatrix Incorporated (약호 QuantaMatrix)라 표기한다.</p>	-표준정관반영
<p><b>제2조 (목적)</b> 당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 병원미생물 동정, 감수성진단 자동화기기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li> <li>2. 질병진단 예후 예측, 연구용 의료기기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li> <li>3. 분자, 면역 다중진단 자동화기기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 나노물질, 광학기기, 반도체 검사 및 분석업</li> <li>4. 면역분석법을 사용한 각종 시약, 의료기기개발,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li> <li>5. 나노물질, 광학기기, 반도체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li> <li>6. 핵산분석 자동화기기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li> <li>7. 유전자, 단백질 분석 상품개발, 제조 및 판매업</li> <li>8. 유전자, 면역표지자 검사, 분석 서비스업</li> <li>9. 생명공학관련 연구기자재 가공 및 도소매업</li> <li>10. 진단시약 제조 및 판매업</li> <li>11.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li> <li>12. 연구개발 서비스업</li> <li>13.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li> <li>14.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li> <li>15.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발, 임대 및 판매업</li> <li>16.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li> <li>17. 조사 및 정보문헌 관련 서비스업</li> </ol>	좌동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18. 기타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b>제3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b>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좌동	
<b>제4조 (광고방법)</b>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quantamatrix.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서울신문에 게재한다.	좌동	
제2장 주식		
<b>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b>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b>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b>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발행할 주식수 변경
<b>제6조 (1주의 금액)</b>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좌동	
<b>제7조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b>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좌동	
<b>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b>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본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 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④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 각항과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좌동	
<b>제8조의 2(우선주식의 내용)</b> ① 본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b>제8조의 2(우선주식의 내용)</b> ① 본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의 발	-표준정관반영 및 발행할 주식 한도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p> <p>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p> <p>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p> <p>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시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p> <p>⑥ 우선주식 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p>	<p>행할 주식의 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 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p> <p>-이하좌동</p>	<p>설정</p>
<p><b>제8조의 3(전환주식의 내용)</b> ① 본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p> <p>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p> <p>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b>제8조의 3(전환주식의 내용)</b> ① 본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전환주식의 발행 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p> <p>-이하좌동.</p>	<p>-표준정관반영 및 발행할 주식 한도 설정</p>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8조의4(상환주식의 내용)</b> ① 본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p> <p>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p> <p>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p> <p>⑤ 본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p>	<p><b>제8조의4(상환주식의 내용)</b> ① 본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상환주식의 발행 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p> <p>-이하좌동</p>	<p>-표준정관반영 및 발행할 주식 한도 설정</p>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p> <p>⑦ 제8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p> <p>⑧ 상환주식 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이를 정한다.</p>		
<p><b>제9조 (신주인수권)</b> ① 주주는 본 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li> <li>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li> <li>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li> <li>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li> </ol>	<p><b>제9조 (신주인수권)</b> ① 주주는 본 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li> <li>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li> <li>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li> <li>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li> </ol>	<p>-표준정관반영</p>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5.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의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p>5.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9.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 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p> <p>1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11.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의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9조의2 (준비금의 자본전입)</b>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p>	<p>좌동</p>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b>제9조의3 (주식매수선택권)</b>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li> <li>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li> <li>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li> </ol> <p>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임직원외의 자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p> <p>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을 포함하여 3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기타 본인의</p>	<p><b>제9조의3 (주식매수선택권)</b>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li> <li>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li> <li>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li> </ol>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p>	<p>-표준정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1조의3) 반영</p>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p> <p>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li> <li>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li> <li>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li> </ol> <p>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당해주식의 시가.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li> <li>2.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li> </ol> <p>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p>	<p>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로 정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의로 정하는 날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그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을 포함하여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날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li> <li>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li> <li>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li> </ol> <p>⑧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당해주식의 시가.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p> <p>2. 당해 주식의 권면액</p> <p>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본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p> <p>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p> <p>(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p> <p>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p>	
<p><b>제10조 (주식의 발행가격)</b>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또는 액면 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그 발행가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좌동</p>	
<p><b>제11조 (일반공모증자등)</b>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 (DR)를 발행할 수 있다.</p>	<p>삭제</p>	<p>-표준정관 반영</p>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③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p>		
<b>(조항신설)</b>	<b>제11조(주식등의 전자등록)</b>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반영
<b>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b> 본 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좌동	
<b>제13조 (명의개서 대리인)</b> 본 회사는 전조 및 다음조의 주식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b>제13조 (명의개서 대리인)</b> ① 본 회사는 전조 및 다음조의 주식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표준정관 반영
<b>제14조 (주권의 명의개서 등)</b> ①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취	좌동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급한다.</p> <p>②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취급규칙에 따른다.</p> <p>③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주식의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이나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전각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b>제15조 (주식의 양도)</b> ①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p>	삭제	-표준정관 반영
<p><b>제16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b></p> <p>① 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16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b></p> <p>① 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명의개서업무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표준정관 반영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b>(조항신설)</b>	<b>제16조의2 (주주명부)</b>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표준정관 반영
<b>제17조 (주권의 재교부)</b> ① 주권의 분할, 병합,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주권의 교부를 청구 할 경우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오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항에서 정하는 상실의 예에 따른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코자 할 경우 회사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상실 에 대한 제권판결 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표준정관 반영
<b>제18조 (수수료)</b>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는 무료로 취급하고, 주권의 분할 및 재발행 등으로 인한 주권의 재교부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제	-표준정관 반영
<b>제19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b> ①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	<b>제19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b>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반영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사는 이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사채		
<b>제20조 (사채모집)</b>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종류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종으로 한다.	좌동	
<b>제21조 (수탁회사)</b> 사채모집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좌동	
<b>제22조 (전환사채의 발행)</b>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금융기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	<b>제22조 (전환사채의 발행)</b>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 총액이 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좌동	-표준정관에 따른 사채액면총액 설정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 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정한다.</p>		
<p><b>제23조 (신주인수권부사채)</b>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li> <li>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li> <li>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4.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해 이사회가 결의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5.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사회가 결의로 금융기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li> </ol> <p>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p>	<p><b>제23조 (신주인수권부사채)</b>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사채의 액면 총액이 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이하 좌동</p>	<p>-표준정관에 따른 사채액면총액 설정</p>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정한다.</p>		
<p><b>제24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b> 제14조(명의개서 등),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p>	<p><b>제24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b> 제11조(주식등의 전자등록), 제14조(주권의 명의개서 등),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p>	<p>-표준정관 반영</p>
<b>제4장 주주총회</b>		
<p><b>제25조 (소집시기)</b> ① 본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p> <p>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p>	<p>좌동</p>	
<p><b>제26조 (소집권자)</b>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p> <p>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좌동</p>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b>제27조 (소집통지 및 공고)</b>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b>제27조(소집통지 및 공고)</b>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표준정관 반영</p>
<p><b>제28조 (소집지)</b>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좌동</p>	
<p><b>제29조 (주주총회 의장)</b>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p> <p>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좌동</p>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b>제30조 (의장의 질서유지권)</b>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p>	좌동	
<p><b>제31조 (주주의 의결권)</b>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p>	좌동	
<p><b>제32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b>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p>	좌동	
<p><b>제33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b>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좌동	
<p><b>제3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b>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좌동	
<p><b>제35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b>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좌동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b>제36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b>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시 서면결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좌동	
<p><b>제37조 (주주총회의 의사록)</b>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의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p>	좌동	
<b>제5장 이사</b>		
<p><b>제38조 (이사의 원수)</b> 본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p>	<p><b>제38조(이사의 원수)</b>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표준정관 반영
<p><b>제39조 (이사의 선임)</b>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좌동	
<p><b>제40조 (이사의 임기)</b>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p>	<p><b>제37조(이사의 임기)</b>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표준정관 반영
<p><b>제41조 (이사의 보선)</b>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p>	좌동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가 본 정관 제38조에서 정하는 원수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연기할 수 있다.</p> <p>②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b>제4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b> ① 이사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p> <p>②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갖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단 이사가 2인 이하 일때는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좌동	
<p><b>제43조 (이사의 직무)</b>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회장 또는 부회장은 사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p> <p>④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위 제3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좌동	
<p><b>제44조 (이사의 보고의무)</b>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좌동	
<p><b>제45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b>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p>	좌동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적어도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이사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p>		
<p><b>제46조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b> 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② 전항의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는 의사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p>	<p><b>제46조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b> 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u>제2항 삭제</u></p>	-불필요 항 삭제
<p><b>제47조 (이사회 결의방법)</b>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p> <p>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좌동	
<p><b>제48조 (이사회 의사록)</b>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좌동	
<p><b>제4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b> ① 이사의 보수와 상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p> <p>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p>	좌동	
<p><b>제50조 (상담역 및 고문)</b>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p>	좌동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② 상근하지 아니하는 상담역이나 고문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6장 감사		
<p><b>제51조 (감사)</b> ① 본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p> <p>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b>제51조 (감사)</b> ① 본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p> <p>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표준정관 반영
<p><b>제52조(감사의 임기)</b>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p>	좌동	
<p><b>제53조 (감사의 보선)</b>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5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좌동	
<p><b>제54조 (감사의 직무)</b> ①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b>제54조 (감사의 직무)</b> ①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표준정관 반영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 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 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수 있다.</p> <p>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b>제55조 (감사록의 작성)</b>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p>	<p>좌동</p>	
<p><b>제56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b>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감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직원 경우에 준한다.</p>	<p><b>제56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b>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및 의결하여야 한다.</p>	<p>-표준정관 반영</p>
제7장 계산		
<p><b>제57조 (사업년도)</b>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좌동</p>	
<p><b>제58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등)</b>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 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p>	<p>좌동</p>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무상태표</li> <li>2. 손익계산서</li> <li>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li> <li>4. 기타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li> </ol> <p>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부분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④ 대표이사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조항신설)</b></p>	<p><b>제58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b>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표준정관 반영</p>
<p><b>제59조 (이익잉여금의 처분)</b> 당회사는 매사업연도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익준비금</li> <li>2. 별도적립금</li> <li>3. 주주배당금</li> </ol>	<p><b>제59조(이익금의 처분)</b> 당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익준비금</li> <li>2. 기타의 법정준비금</li> <li>3. 배당금</li> </ol>	<p>-표준정관 반영</p>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4. 임의적립금 5. 임원상여금 6.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b>제60조 (이익배당)</b>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좌동	
<b>제61조 (이익소각)</b> ①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소각할 주식의 수량 및 소각의 방법 등 이익소각의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좌동	
<b>제62조 (중간배당)</b> ① 회사는 6월30일 24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의 합계액	좌동	

기존정관	정관변경(안)	비고
<p>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 하여야 할 이익준비금</p> <p>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b>제63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b> ①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당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회사에 귀속한다.</p> <p>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p>	좌동	
제8장 기타		
<p><b>제64조 (업무규정)</b> 본 회사는 업무의 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p>	좌동	
<p><b>제65조 (규정외 사항)</b>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p>	좌동	
<p><b>(신설)</b></p>	<p>부 칙</p> <p>이 정관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 제13조 제3항, 제1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p>	